

글로벌벤처로 수출금융제도 ‘포페이팅’, 위한

포페이팅(Forfaiting)은 권리의 포기, 양도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a' forfait」에서 유래된 용어로 수출업체가 대외무역·용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연불채권을 채권의 소지자(수출자)가 불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은행에 매각하는 금융거래이다. 따라서 포페이팅은 연불수출시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수출금융제도이다.

포페이팅에 하는 이유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수출업체들에게는 거래 성사를 위해 수입업체에게 연불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 국가나 외환사정이 좋지않은 국가들과 거래시 수출업체들은 연불수출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 때문에 *일람불(Sight L/C)만을 고집해 소중한 수출상담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신용장의 미결제 및 미수수출채권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출업체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역거래는 대개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을 준수하는 신용장에 의거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나 수입자와의 분쟁(Claim), 수입국의 외환통제(Moratorium), 신용장 개설은행의 파산 및 지불 불능, 법원의 지불정지 명령(Injunction Order) 및 수입자의 고의적 결제회피 등에 대하여는 신용장은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포페이팅은 수출업체의 연불계약을 가능케 함으로써 수출업체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인다. 포페이팅을 통해 수출업체들은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수입국의 정치적인 상황, 개설은행, 상사분쟁 등의 위험으로부터 해방
- 신속한 자금회전
- 재무재표상 우발채무 계정으로 표기할 필요가 없어, 재무제표상의 이점
- 고정이자율이라, 이자를 변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해방
- 환율 변동 위험의 최소화
- 수출대금 회수 관리 불필요, 부대비용 절감
- 간단한 매입서류 업무절차

포페이팅시 은행으로 전가되는 위험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수입국가 위험 (수입국 법원의 지급정지 가처분 명령 포함)
- 개설은행 위험 (상사분쟁 포함)

위의 범주로부터 발생하는 최종의 채무의 위험은 은행(Forfeiter)에서 모두 부담한다.

통상적으로 포페이팅이 가능한 채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환어음 (Bill of exchange)
- 약속어음 (Promissory notes)
- 신용장 (Letter of Credit)
- 은행 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 연지급 신용장 (Deferred payment LC)
- 매입가능한 보증 채권 (Aval on negotiable instruments)

은행은 3일내로 포페이팅 가능여부를 회신하고 가능한 경우 해당 비용과 조건을 알려준다.

포페이팅은 간단한 할인의 개념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진행구조나 유형 등은 아주 다양하다.



<그림> 일반적 포페이팅 업무절차

- 수입업체와 수입국가
- 신용장 개설은행과 지점명
- 금액과 만기까지의 기간
- 수출 품목
- 해당된다면, 선적기간과 선적횟수
- 필요로 하는 그 밖의 다른 정보나 서류



1. 환가료 (Interest rate)

수출비용의 회수(Nego)와는 달리 수입국·수입자 또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포페이팅의 이자율이 달라진다. 리스트가 낮으면(즉 개설국가,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좋으면) 이자율도 낮아지고, 반대로 리스크가 높으면(즉 개설국가,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낮으면) 이자율도 높아진다.

2. 보증료 (Commitment fee)

만약 선적 전에 확약을 받을 경우, 선적 완료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약정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경우.

3. 지급유예기간 (Grace days)

수입국가나 채무자의 만기시 연체가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가료계산시 지급유예 기간을 기준 날짜에 포함시킨다. 지급유예기간은 만족스러운 거래기록이 있는 경우 지역별로 면제된다.

※자료제공/HSBC 포페이팅 비즈니스팀

1988년부터 한국에서 가장 먼저 포페이팅 서비스를 선보인 HSBC은행은 전세계 83개국 1만여 개의 지점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위험부담의 범위가 가장 넓다. 분쟁 클레임은 물론, 수입국 법원의 지불정지명령까지 부담하는 은행은 HSBC가 국내에서 유일하다.

문의 : 02-2004-0382~3

※용어설명

일람불 : 수취인이 지급인에게 어음 금액을 청구하면서 함께 제시하면 바로 지급하여야 하는 어음